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3885 취득세등의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627,040원, 취득세 가산세 12,785,100원, 지방교육세 2,324,96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8,65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627,040원, 취득세 가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세 12,785,100원, 지방교육세 2,324,96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8,65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7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C, 자녀 D, E, F, G이 있고, 원고는 G의 처이다.

나. ① 1979. 10. 24. [redacted]구 H 대 2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G과 망인 명의로 1979.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1. 20. 망인 소유의 위 1/2 지분 중 각 1/4 지분(위 토지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D, E, F, G 명의로 각 2015.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6. 3. 28. D, E, F, G 소유의 위 토지의 각 1/8 지분 중,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토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인 각 1/16지분(합계 위 토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① 1988.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7.98㎡, 2층 내지 5층 각 145.18㎡, 지층 218.6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G과 망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1. 20. 망인 소유의 위 1/2 지분 중 각 1/4 지분(위 건물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D, E, F, G 명의로 각 2015.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6. 3. 28. D, E, F, G 소유의 위 건물의 각 1/8 지분 중,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G은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4 지분을 각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3,320,873,223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92,984,450원, 지방교육세 5,313,390원, 농어촌특별세 6,641,740원 합계 104,939,580원[1]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0.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4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11,627,040원, 지방교육세 2,324,960원, 취득세 가산세 12,785,100원(= 과소신고가산세 11,623,85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61,25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8,6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7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6,912,54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2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2.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1) 원고의 신고 · 납부 세액은 이 중 1/2인 취득세 46,492,230원, 지방교육세 2,656,690원, 농어촌특별세 3,320,870원 합계 52,469,790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2016. 10. 2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수령일(2015. 5. 20.)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5. 2.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

2)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언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무상취득에 관한 세율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D, E, F, G이 2016. 1. 20. 망인 소유의 위 각 1/2 지분 중 각 1/4(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3. 23.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4.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을 G과 원고(개명 전 성명 : I)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다는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증서 2009년 제37호)를 작성하였다.

유언공정증서
1. 유언자(망인)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G 수증자 원고 <별지> 1. [토지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건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위 표시 부동산을 유언자는 수증자 G, 수증자 원고에게 유증한다.

2) D, E, F, G은 2016. 1. 20. 피고에게 취득세 등 104,939,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이에 대한 경정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경 D, E, F, G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등을 환급하였다.

3) D, E, F, G과 C는 2016. 1. 2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 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5. 11. 27. 성남시 분당구 J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C, D, E, F, G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한다. - 다음 - 1. (토지) 서울 강남구 K 대 393.8㎡(98.45/393.8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24.6125/393.8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2. (토지) 서울 강남구 L 대 358.4㎡(2/3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C의 지분은 6/33, D, E, F, G의 지분은 각 4/33으로 한다.
3. (토지) 서울 서초구 H 대 293.1㎡(이 사건 토지)(1/2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1/8로 한다.
4. (건물) 서울 서초구 H 대 293.1㎡(이 사건 건물)(1/2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1/8로 한다.
5. (토지) 서울 서초구 M 대 302.4㎡(1/2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C의 지분은 1/2로 한다.
6. (건물) 서울 서초구 M 대 302.4㎡(1/2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C의 지분은 1/2로 한다.
7. (토지) 남양주시 N 임야 18,744㎡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1/4로 한다.
8. (토지) 서울 강북구 O 임야 6,678㎡(1/5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1/20로 한다.
9. (토지) 파주시 P 임야 55,636㎡(1/5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지분은 각 1/20로 한다.
10. (토지) 파주시 Q 전 7,465㎡(2,489/7,465 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D, E, F, G의 각 지분은 2,489/29,860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가)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남우체국 작성의 원고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이하 '이 사건 배달증명서'라 한다)에,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하남시 R건물, 6308호 1604호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송달서에 'A'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하단에 '재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에 '우편물이 잘못되어 받아서 다시 반환합니다. 재송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7.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6. 5. 2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송달서에 'A'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납세고지서는 팩스인지 등기우편인지 모르지만 2016. 5. 25.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2016. 5. 27. 피고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재발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배달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도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6. 5. 2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 ·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도지사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부적법한 조세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2.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10. 28.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5. 2.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제기한 소는 조세심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09. 4. 10.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언자(망인)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을 수증자 G, 수증자 원고에게 유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증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도 서울 강남구 K 토지, L 토지, 서울 서초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남양주시 N 토지, 서울 강북구 O 토지, 파주시 P 토지, Q 토지나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언공정증서에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에 관한 처리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괄유증'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증은 특정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사정도 없으므로, 무상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 E, F, G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 취득으로 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 E, F, G이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것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신고 · 납부된 취득세 등을 D, E, F, G에게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강동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끝.